

금융지원

관련부처
기타

지원대상
중소·중견기업

신청시기
연중수시

2-1. 기술보증기금

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심사하여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받도록 지원

● 보증대상

- 신청자격
 -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 -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1,000인 이하이고, 총 자산액이 1,000억원 이하인 기업
 - 산업기술연구조합

■ 신기술사업

-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
 -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, 제품화하는 사업
 -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사업
 - 다른 법령에서 규정된 기술개발사업
 - 기타 생산성향상, 품질향상, 제원가절감, 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, 제품화하는 사업
- * 업종별 제한은 없으나, 제조, IT, 연구 및 개발, 기술 서비스업종 등이 주로 해당되며, 여타 업종 영위기업도 상기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보증대상이 됨.

- 중점 지원대상 :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
 - 벤처·이노비즈기업
 - 다음 업종 영위기업 중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인 기업
 -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, 미래성장유망산업(6T) 영위기업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시행령에 따른 기술집약산업 등
 - 기술인증 획득기업, 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, 기술력 인정기업, 기술관련상 수상기업
 - 우대내용 : 우선적으로 보증지원(보증비율(85%) 우대)

-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
 -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
 - 휴업 중인 기업, 보증금지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, 대표이사 및 실제 경영자가 신용관리정보 대상자인 기업 등

☞ 보증운용

- 보증한도 : 일반보증은 최고 30억원 이내
 - 기업의 신용도, 기술력,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보증지원 가능금액 결정
 - 일부자금의 경우 최고 70억원까지 보증 가능
- 보증료 : 최저 0.5~3.0%
 - 기업평가등급, 기업 및 보증상품의 특성에 차등 적용
- 보증비율 : 신규보증의 보증비율은 85% 적용

☞ 주요 보증상품

- 정책자금 One-Stop 지원보증

구분	대상
정보통신진흥기금 응용기술개발 지원사업 (미래창조과학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S/W, 컴퓨팅, 차세대통신네트워크, 정보통신미디어, 전자정보 디바이스 등 IT 및 IT기반 융합분야 기술개발기업 ※ (관련 페이지) 정보통신 응용개발지원사업 : p.47
방송발전기금 프로그램제작비 융자사업 (한국전파진흥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방송사업자(지상파, SO, PP, 위성방송, DMB 등)
중소·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 (지방자치단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벤처기업, 기술창업기업 등 • 지자체가 요청한 기업

- 유관기관 협약에 의한 보증

구분	대상
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우선지원대상 : 신성장동력기업(창업, 수출, 녹색성장, 기술 혁신형, 설비투자) • 시행은행 : 국민, 농협, 기업, 하나, 우리, 외환, 신한, 경남, 광주, 부산, 대구, 전북

구분	대상
금융기관과의 보증로지원 협약보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우선지원대상 : 신성장동력기업(창업, 수출, 녹색성장, 기술 혁신형, 설비투자기업, 지식서비스산업 영위기업) 시행은행 : 국민, 신한, 기업, 우리, 하나, 경남, 광주, 대구, 부산, 농협, 외환
이노비즈 금융지원 협약보증 (금융기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이노비즈기업
여신심사용 기술평가 인증보증 (금융기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협약금융기관이 여신심사를 목적으로 기술평가를 의뢰한 기업
특히기술가치평가보증 (특허청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* (관련 페이지) 보증연계 특히기술평가 지원사업 : p.64
공공구매론 협약보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중 '공공구매론 온라인 시스템'을 통하여 제공된 신용등급이 B+ 이하인 기업 시행은행 : 하나은행
녹색브릿지론 협약보증 (기업은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수주업체로서 모기업이 기금과 은행에 추천한 협력기업으로 기금 규정에 의한 보증대상기업

- 전자상거래보증
 -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구매기업에게는 대금지불능력 확보를, 판매기업에게는 안정적인 대금회수를 보장해 주기 위한 보증 제도
- 구매자금융
 -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 금융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 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구매자금 융방식으로 전환, 납품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제도
- 네트워크론
 - 우량 모기업이 추천한 협력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술보증기금과 금융기관이 모기업과 납품거래에 필요한 생산, 구매자금에 대하여 신용보증과 대출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
- (잠재)수출기업 지원
 - 중소기업의 수출잠재력 확충을 위해 우대조치를 시행하여 보증하는 제도
- 담보어음보증
 - 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담보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여 안전하게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증 제도

- 이행보증
 - 기업이 건설공사, 물품의 공급,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제도
- 기타 보증
 - 지급보증의 보증 : 금융기관 및 농·수·축협으로부터 각종 대내외 지급보증을 받기 위한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제도
 - 회사채보증 : 증권시장에서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회사채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하는 제도
 - 사채인수보증 : 기업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기관,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투자신탁운용사와의 사채인수계약에 의해 자금조달하는 경우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제도
 - 지역전략산업지원제도 : 지역별 강점과 특성을 고려한 지방소재 중소·벤처기업의 차별화된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
-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
 - 일자리 창출과 창업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술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창업보증을 지원
- 고용창출 특별 운전자금 지원
 - 종업원 고용에 따른 추가 운전자금 소요분에 대한 특별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신규고용 확대를 유도
- 기술·산업융합 특례보증
 - 기술융합을 진행 중이거나 융합성과를 활용·사업 중인 중소기업에 기술융합 단계별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보증 제도
- 예비 스타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례보증
 - 도약기에 접어든 벤처기업 중 기술성·사업성이 우수하고 신제품 사업화, 신규 수주 등 매출 급신장이 예상되는 기업을 발굴하여 성공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자금 등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보증료 감면 등 특례보증제도를 마련하여 우리나라 대표기업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
- 청년창업 특례보증
 - 청년사업가의 아이디어가 상품화될 수 있도록 청년창업에 특화된 제도를 마련하여 청년의 창업기회 확대를 유도
- 그 외 문화산업완성보증, 대·중소기업 상생협약보증, R&D보증, 지식재산(IP)보증 등

❖ 추진절차

단계별	취급자	주요내용
보증신청	신청기업	인터넷(홈페이지 내 사이버영업점)에서 신청 (영업점 방문, 전화, 고객센터 신청도 가능)
↓		
상담	영업점 평가담당자	고객과의 상담을 통하여 기술사업내용, 보증금자·제한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 결정 및 서류 준비 안내
↓		
접수/조사자료 수집	영업점 평가담당자	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(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)
↓		
기술평가/조사	영업점 평가담당자	신청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기술개발능력, 제품화능력, 생산 능력 및 경영상태 등을 확인
↓		
심사·승인	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	기업의 기술력, 사업전망, 경영능력,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
↓		
보증서 발급	영업점 평가담당자	보증약정 후 전자보증서를 채권기관에 전자발송

❖ 신청절차

- 신청시기 : 연중수시
- 신청방법 :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방문, 전화, 고객센터 전화 혹은 홈페이지 내 사이버영업점(www.kibo.or.kr)에서 신청



www.kibo.or.kr

•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-1120

금융지원

☑ 관련부처
기타

☑ 지원대상
중소기업

☑ 신청시기
연중수시

2-2. 신용보증기금

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

☛ 보증대상

- 개인기업 :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
- 법인기업 :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
- 기업단체 :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

* 대기업 제한, 상장기업은 특정자금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

☛ 보증운용

- 보증한도
 -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일반보증을 합하여 최고 30억원 이내
 -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될 수 있음
 - 일부 자금의 경우 최고 100억원까지 보증 가능
- 보증료 : 최저 연 0.5%~3.0%
 - 기업 및 보증상품의 특성에 차등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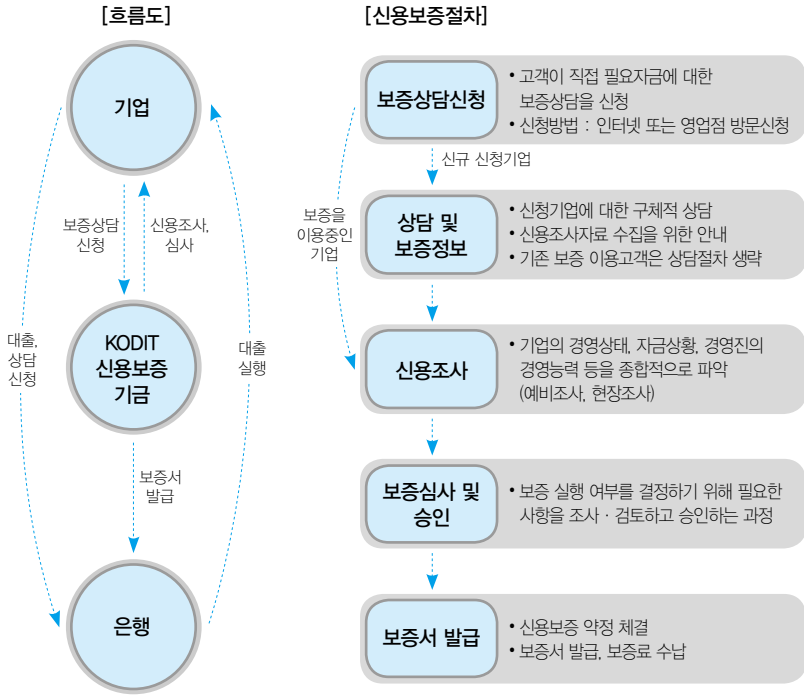
∴ 보증상품

일반운전자금	기업일반자금보증(기업일반자금대출, 종합통장대출, 할인어음 등)
창업자금	혁신형 창업기업보증 / 청년창업특례보증 / 예비창업자 창업보증
구매자금	구매자금융보증 / 네트워크론보증
수출입자금	무역보증
시설자금	일반시설자금보증 / 임차자금보증 / 태양광발전 시설자금보증 / 선박금융 시설자금
비금융상품	이행보증 / 담보어음보증 / 상거래담보보증
전자상거래	전자상거래보증 / 전자상거래 담보용보증
협약자금	남북협력기금대출 협약보증 / IT 설비투자지원사업 협약보증
특화보증프로그램	사회적기업 나눔보증 프로그램 / 1인 창조기업 키움보증 프로그램 / 협동조합 희망보증 프로그램
건설공사 브릿지론	건설공사 브리지론보증
지식재산보증	개발자금 보증 / 이전자금 보증 / 사업화자금 보증 / 프로젝트 자금 보증 / 가치평가 보증 / 우대 보증
M&A 보증	합병 / 주식인수 / 영업양수

∴ 보증우대

혁신형 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진보 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술집약산업 영위기업 / 기술혁신형 기업 혁신제품 생산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차세대 성장산업(6T) 영위기업 /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참여기업 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출중소기업 / 지역별 전략적 육성산업 영위기업 /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/ 부품·소재 전문기업 / 혁신형 창업기업 /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/ 생산성경영체제(PMS) 인증기업
우대부문 보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용보증기금 선정기업 정부 등 선정 우대기업 인증마크 획득, 지식관련 수상기업 등
녹색성장기업에 대한 보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에 따라 정부로부터 녹색기술인증 받은 기업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등록되거나 신고된 기업 등

추진절차



신청절차

- 신청시기 : 연중수시
- 신청방법 : 영업점 방문 혹은 신용보증기금홈페이지 사이버영업점 (www.kodit.co.kr)에서 신용보증상담 신청

문의처

www.kodit.co.kr

•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1588-6565